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 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3 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 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08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14



정보공개서

롯데웰푸드(주)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전화번호] 02 - 2670 - 6179 [팩스] 02 - 6672 - 017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나무루전문상담: 02 - 2670 - 6179

< INDEX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0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16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7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5
VI.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4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롯데월드푸드(주)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10.12	2017.10.01	이영구,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법인등록번호	110111-6536481	사업자등록번호	186-81-009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신동빈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이영구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이창엽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엽	02-2670-6114	02-2670-6184
사용인 (등기임원)	황성욱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이동규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손문기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황덕남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사용인 (등기임원)	한현철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정윤화	나뚜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구	02-2670-6114	02-2670-6184
계열회사	롯데지알에스(주)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차우철	02-709-1114	02-709-1003
	법인등록번호	110111-0262850	사업자등록번호	106-81-23498	
	(주)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외 2 개	서울시 중구 청계산로 100(수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홍철	02-1577-0711	02-2671-6533
	법인등록번호	110111-0899976	사업자등록번호	208-81-27413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칠성음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0 길 1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윤기	02-3479-9114	02-535-8619
	법인등록번호	110111-0003684	사업자등록번호	214-81-0770	
	롯데쇼핑(주)	롯데프레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3~4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상현, 정준호, 강성현	02-2290-5684	02-2290-5997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86	사업자등록번호	104-81-26067 / 206-85-11698	

※ 2018. 06. 01. 롯데지알에스주식회사의 나뚜루사업부문 영업 양수

※ 2022. 07. 01 롯데푸드주식회사 흡수 합병

※ 2024.3 월부로 (주)코리아세븐이 롯데씨브이에스 711(주)(舊한국미니스톱)을 흡수 합병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나뚜루 시그니처 (Natuur Signature)	나뚜루 로고에 상위브랜드를 의미하는 'Signature'를 더함
상 호	나뚜루 시그니처 ○○○점	해당 지역 명 표기
상 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857-1830000
광 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 41-0046-7000000

5.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 년	2,330,671,016	1,247,779,760	1,082,891,255	1,546,374,038	82,693,406	30,359,000
2022 년	3,758,489,001	2,021,848,848	1,736,640,152	2,443,855,289	80,897,560	18,708,119
2023 년	3,835,009,481	2,039,524,005	1,795,485,476	3,300,751,826	130,507,053	59,491,547

※ 당사는 2017.10.12 일부로 분할 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1, 별첨 1-2]와 같습니다.

※ 2022. 07. 01 롯데푸드주식회사 흡수합병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2017.10.12 일부로 분할 후 설립이 되었습니다. 분할 후 설립되었으나, 가맹사업 보네스빠, 빠뮤 영업표지로 분할 후 설립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당사에서 운영하던 가맹사업(보네스빠, 빠뮤)는 2020 년 3 월 31 일자 직영/가맹사업을 철수 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 년 일부로 나뚜루 사업을 롯데지알에스에서 롯데제과로 영업양수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현 직위	사업 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창엽	대표이사	2023.03 ~ 현재	대표이사	대표이사

관련 임원	이동진	전무	2022.12 ~ 현재	전무	영업본부장
	임종구	상무	2022.07 ~ 현재	상무	나뚜루 영업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신동빈	대표이사	2000.03 ~ 현재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영구	대표이사	2021.03 ~ 현재	대표이사	대표이사
	황성욱	사내이사	2022.03 ~ 현재	사내이사	사내이사
	이동규	사외이사	2022.03 ~ 현재	사외이사	사외이사
	손문기	사외이사	2021.03 ~ 현재	사외이사	사외이사
	황덕남	사외이사	2022.03 ~ 현재	사외이사	사외이사
	한현철	사외이사	2022.07 ~ 현재	사외이사	사외이사
	정윤화	사외이사	2022.07 ~ 현재	사외이사	사외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56	5	6,843

당사는 2022 년 7 월 1 일부로 롯데푸드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상기 기재된 임원수(명) 및 직원수(명)는 롯데웰푸드(주) 전체 인원수(명) 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나뚜루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롯데웰푸드(주)	가맹사업경영	'99 년 7 월~현재	'나뚜루'(등록번호:20080100085) 아이스크림/빙수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07.8 월~20.3.31 (등록취소)	'보네스빠'(등록취소) 제과제빵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16.7 월~20.3.31 (등록취소)	'빠뮤'(등록취소) 제과제빵 가맹사업경영
특 수 관 계 인	롯데쇼핑(주)	가맹사업경영	'20.4 월~현재	'롯데프레시'(등록번호 20200564)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가맹사업경영	'11.10 월~'21. 7 월 (등록취소)	'롯데슈퍼'(등록취소) 슈퍼마켓 사업을 경영
		가맹사업경영	'11.10 월~'21. 7 월 (등록취소)	'롯데마켓 999'(등록취소) 기타소매업 사업을 경영
	롯데지알에스(주)	가맹사업경영	'80.7 월~현재	'롯데리아'(등록번호:20080100155)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 사업경영

계 열 회 사		가맹사업경영	'07.2 월~현재	'엔제리너스'(등록번호: 20080100153) 라는 영업표지의 커피 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14.11 월~현재	'크리스피크림'(등록번호: 20140778)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 사업경영
	(주)코리아세븐	가맹사업경영	'89.5 월~현재	'세븐일레븐' (등록번호: 20080100064) 영업표지의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90.11 월~현재 (등록취소)	'미니스톱' (등록번호: 200080200069) 영업표지의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20.12 월~'22.06 월 (등록취소)	'수퍼바이트' (등록번호: 20210290) 영업표지의 편의점 가맹사업경영
	롯데칠성음료(주)	가맹사업경영	'10.11 월~현재	'롯데칠성음료'(등록번호: 20100100112) 영업표지의 음료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 2 지식재산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 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NATUUR	상표권	1996.11.05	1998.07.06	출원번호 4119960014091	롯데웰푸드(주)	2028.07.06
				등록번호 4100467050000		
나뚜루	상표권	1996.11.14	1998.09.08	출원번호 4119960014086	롯데웰푸드(주)	2028.07.22
				등록번호 4100467000000		
나뚜루 시그니처	상표권	2020.12.18	2022.04.14	출원번호 4020200232671	롯데웰푸드(주)	-
				등록번호 4018571800000		
Natuur Signature	상표권	2020.12.18	2022.04.14	출원번호 4020200232673	롯데웰푸드(주)	-
				등록번호 4018571820000		

출원신청만 된 경우의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나뚜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1999 년 7 월 16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1998 년 6 월 18 일)

2. 나뚜루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롯데리아	나뚜루	조영진	2008.02.12 ~ 2013.02.0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주)롯데리아	나뚜루	노일식	2013.02.05 ~ 2017.06.2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나뚜루	노일식	2017.06.30 ~ 2018.01.2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지알에스(주)	나뚜루	남익우	2018.01.25 ~ 2018.05.3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 길 47
롯데제과(주)	나뚜루	신동빈	2018.06.01 ~ 2023.03.3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제과(주)	나뚜루	민명기	2018.06.01 ~ 2021.11.3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제과(주)	나뚜루	이영구	2021.3.23 ~ 2023.03.3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제과(주)	나뚜루	이창엽	2023.3.23 ~ 2023.03.3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웰푸드(주)	나뚜루	신동빈	2023.04.01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웰푸드(주)	나뚜루	이영구	2023.04.01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롯데웰푸드(주)	나뚜루	이창엽	2023.04.01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 길 10

※2023.04.01 롯데제과에서 롯데웰푸드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나뚜루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나뚜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이스크림/빙수	아이스크림

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나뚜루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점)

지 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가 맹	직 영
전 체	51	48	3	36	34	2	26	25	1
서 울	9	6	3	7	5	2	4	3	1
부 산	5	5	0	2	2	0	2	2	0
대 구	3	3	0	3	3	0	2	2	0
인 천	3	3	0	1	1	0	1	1	0
광 주	2	2	0	1	1	0	1	1	0
대 전	0	0	0	0	0	0	0	0	0
울 산	0	0	0	0	0	0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 기	10	10	0	9	9	0	6	6	0
강 원	3	3	0	1	1	0	1	1	0
충 북	0	0	0	0	0	0	0	0	0
충 남	5	5	0	2	2	0	2	2	0
전 북	1	1	0	1	1	0	1	1	0
전 남	2	2	0	1	1	0	0	0	0
경 북	3	3	0	3	3	0	2	2	0
경 남	4	4	0	4	4	0	3	3	0
제 주	1	1	0	1	1	0	1	1	0

5. 최근 3 년간 나뚜루 가맹점 수

(단위: 점)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52	7	1	10	1	48
2022 년	48	0	1	13	1	34
2023 년	34	0	0	9	1	25

6. 나뚜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나뚜루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9 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롯데월드푸드(주)	나뚜루	20080100085	아이스크림/ 빙수	48 / 3	34 / 2	25/1
계열회사	롯데쇼핑(주)	롯데프레시	20200564	종합소매점	66 / 63	109 / 114	135/91
		롯데슈퍼	20100100130	종합소매점	32/201	16/65	7/121
		롯데마켓 999	20110100500	종합소매점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20080100064	편의점	10,900/134	12,553/124	12,783/154
		미니ストップ	200080200069 (등록취소)	편의점	2,568 / 23	1,508/17	190/3
		수퍼바이츠	20210290 (등록취소)	패스트푸드	0/3	-	
	롯데칠성음료 (주)	롯데칠성음 료	20100100112	(건강) 식품	756/0	717/0	0
	롯데지알에스 (주)	롯데리아	20080100155	패스트푸드	1,211 / 115	1,193 / 106	1191/97
		엔제리너스	20080100153	커피	373 / 76	335 / 77	302/74
		크리스피크 림	20140778	제과제빵	60 / 71	58/70	54/73

7. 가맹점사업자의 2023 년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나뚜루 가맹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매출액은 154,465 천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677,885 천원에서부터 5,262 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말	2023 년 평균매출액(단위: 천원)						비고
		매출액		상한		하한		
	가맹점수	연간	면적(3.3 m²)당	연간	면적(3.3 m²)당	연간	면적(3.3 m²)당	
전 체	25	154,465	11,128	677,885	52,710	5,262	1,165	
서 울	3	해당없음						5 곳 미만
부 산	2	해당없음						5 곳 미만
대 구	2	해당없음						5 곳 미만
인 천	1	해당없음						5 곳 미만
광 주	1	해당없음						5 곳 미만
대 전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울 산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세 종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 기	6	105,615	7,542	318,216	31,822	33,523	1,594	
강 원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충 북	0	해당없음						5 곳 미만
충 남	2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 북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 남	0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 북	2	해당없음						5 곳 미만
경 남	3	해당없음						5 곳 미만
제 주	1	해당없음						5 곳 미만

※ 가맹점 수 : 12 월말 기준으로 영업중인 가맹점

※ 매출 산정 : 12 월말 기준으로 6 개월 이상 영업을 진행한 가맹점만 수치 산정에 반영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 ·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및 지점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POS 매출에 따른 것입니다.

8. [나뚜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나뚜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5	2,649 일 (7 년 3 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나뚜루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364,743 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 쪽을 참고하십시오

구 분	내용			기간	지출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기간: 23.01~23.12)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 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광고 선전비 소계				308,682		308,682		-				
판 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비 소계			56,061	41,656	14,405	
합계			364,743	350,338	14,405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광고종합금융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54	02) 2010-22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작성한 당사 서류를 제출하여 가상계좌 발급 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 한 다음 롯데제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나뚜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6,160				
가맹비	5,500	가맹 체결 후 3 일 이내	법규 상 반환 사유	지적재산권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실시권 부여	
교육비	660	가맹 체결 후 3 일 이내	교육입소 前 가능	피복비 및 교육 제공 소멸	※ 2 인 교육비용
개점행사비	해당 없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보증금	7,000	계약 체결후 3 일 이내	○가맹금, 물품공급대금 등 금전지급채무 미이행,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발생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계약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3,160	-
가 맹 금	5,500	부가세 포함
보 증 금	7,000	부가세 미포함
교 육 비	660	부가세 포함
개점행사비	해당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설명드리기 전 먼저 당사의 시공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2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m², 부가세 포함)

구 분	가맹점사업자 자체공사	가맹본부 등록업체공사	비 고
계약주체	가맹점 사업자 자체공사	점주 ↔ 시공업체 (가맹본부 등록업체)	공사진행 방법은 점주선택 사항
도면설계비	3,080 (※10 평 기준)		점포 컨디션 및 설계 난이도 등의 여건에 따라 액수 변동 가능
매뉴얼비	165 천원 / 3.3 m ²		-

지급기한	계약금 50%: 착공 1 일 전 잔 금 50%: 준공 1 일 후	공사 전	-
------	--	------	---

* 설계비: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실측도, 평면도, 천정도, 바닥패턴도, 입면도, 전기도, 설비도 등), 공내역서 등

* 매뉴얼비: 디자인 매뉴얼 지급 (3~5 년 주기 신규 디자인 개발 등)

* 감리비: 가맹점사업자 자체공사 시 가맹본부의 공사 감리, 관리감독 등

가맹본부 등록업체를 통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²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 고
총 계	-	164,450 ~ 177,650	8,222 ~ 8,882	-	-	20 평(66 m² 기준)
인테리어 공사비 (점포내장공사)	가맹본부 등록 시공업체	66,000 ~ 77,000	3,300 ~ 3,850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가맹본부등록 시공업체 간 계약 시 그 내용에 의함	착공 전 계약취소	1. 공사업체 선정은 점주 선택사항 2.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기한 등 변동 가능 3. 모든 공사는 가맹본부의 설계 및 시방 기준으로 시공
간판 및 실내 외 사인물	롯데웰푸드(주)	6,600~ 7,700	330 ~ 385	준공 전	제작 전 계약취소	
가구 및 집기류		8,800 ~ 9,900	440 ~ 495	설치 전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가구, 이동가구
주방, 설비류		71,500	3,575	개점 전	설치 전 계약취소	쇼케이스 1EA 기준
전산장비 (POS 외)		2,750	137.5	개점 전	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8,800	440	개점 전	계약취소로 인한 미제공 시	

- ※ 별도사항: 1 차 인입공사(전기, 설비), 철거비, 전화,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시설, 급배기시설, 테라스, 간판 외 외장공사, 소모품, 화장실 조성 등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권 및 입지, 점포 조건에 따라 상기 금액 및 기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맹본부 등록 시공업체: 코라코코리아, 인터피아, 나무와사람, 새암건축, 유엠컴퍼니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① 입지선정 주체 및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나뚜루전문점 담당 (02-2670-6179)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조사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점포 출점 기준

구 분		내 용
점포기준	점포면적	1 층 실면적 66 m ² (20 평 이상) 전면 5~6m 이상, 내부 천정고 2800mm 이상, 디핑존 면적 확보 가능(W5,000, D2,750)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도 출점 가능)
	전기용량	최소 35KW 이상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 / 휴게음식점)
	정화조용량	근린생활시설 기준에 부합
	소방설비	소방설비 완비(방염필증, 1 층 이상 또는 특수상권을 경우 완비증명서)
	각종 인허가	보건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받거나 귀하의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당사 점포운영 교육 이수자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나뚜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가맹금 분납 제도: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7 쪽에 나와있습니다.

1) 비용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교육훈련비	롯데웰푸드(주)	660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롯데웰푸드(주)	1,000 ~ 200,000	협의	공사 미실시	공사 시작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당사자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 비용	롯데웰푸드(주)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기기 등의 내구 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지연이자	롯데웰푸드(주)	아래 ※2) 참조		해당없음	-	-

- ※ 1)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미납하거나 기타의 금전채무를 체납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기일로부터 [15]일의 유예기간 후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각 기수마다 미납금액에 대하여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기수라 함은 매달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그리고 매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 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6 쪽에 나와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 연장 및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보호나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가맹점주의 계약 연장 요청시점의 전년도 월 평균 순매출과 경상이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인정되거나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점포이전이나 노후시설보수 등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나뚜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롯데제과(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초기경영 지도비 및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4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에는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권리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가맹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가맹점은 점포의 운영을 즉시 중지하며 점포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점포라는 것 소비자 또는 공중에게 직, 간접적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② 가맹점은 본 프랜차이즈시스템이나 나뚜루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식단, 설비, 방법, 절차 및 기술, 그리고 본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다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광고 등에 의한 사용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은 나뚜루 지적재산권이 표시된 간판, 기구, 설치물, 광고물, 서식용지 등의 물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본 계약에서 지정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점포나 영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한 경우, 가맹점은 혼동, 오인 또는 기만할 염려가 있는 다른 영업과 관련하여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지적재산권의 복제물, 위조물, 사본, 모조품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며 또한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오해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출처의 표시, 설명,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에 따른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맹점으로 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모든 매뉴얼, 기록, 파일, 지시, 서신, 기타 가맹점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가맹 본부의 소유로 인식되는 모든 문서 또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체결한 계약서의 가맹점의 보관분이나 당사자간의 서신 및 법규정에 따르기 위해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 1) 귀하가 나무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와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귀하가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별첨 4-2 물품 내역(원부재료)>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 4-3 주요품목 공급가격 상·하한>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아이스크림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을	1 회 위반: 경고	-
아이스크림 케익류			
일반 케익류			

부자재	위하여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2 회 위반: 2 차 경고공문 및 휴점 예고 3 회 위반: 3 일 휴점 4 회 위반: 가맹해지 사유에 해당	
포장재			
음 료			
커 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당사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규 상품과 용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 지정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가맹본부 다른 가맹점주 및 제 3 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경고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및 4-1 상품·용역 권장가격>과 같습니다.

※ 귀하가 <별첨 4 및 4-1 상품·용역 권장가격>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규 상품과 용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이스크림 / 빙수	나뚜루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설정 방법	가맹계약서 영업거점지역 표시도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설정 기준	①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② 주택가, 아파트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 ③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부여 ④ 특수상권의 경우 위의 상권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백화점, 터미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KTX(기차)역사, 휴게소, 스키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골프장, 방송국, 영화관, 대규모 공장단지 內, 아울렛, 리조트(콘도), 대형 건물 內(10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등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나뚜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 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편의점	CU	바/ 컵/ 파인트/ 케이크/ 콘	완제품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365플러스		
	씨스페이스		
할인점	롯데마트	바/ 컵/ 파인트/ 케이크/ 콘	완제품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이랜드		
	메가마트		

SSM	롯데슈퍼	바/ 컵/ 파인트/ 케이크/ 콘	완제품
	GS슈퍼		
	홈플러스슈퍼		
	에브리데이		
기타	개인사업자	벌크	물품공급거래 가격 상이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 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자사몰외	네이버	https://brand.naver.com/natuur	바/컵/파인트/케이크	완제품
	굿아이스크림	https://www.g-ice.co.kr	바/컵/파인트/벌크	완제품 / 벌크(세부업종 다름)
	쿠팡	https://www.coupang.com/	바/ 컵/ 파인트	완제품
	카카오톡	https://gift.kakao.com/	바/ 컵/ 파인트	완제품
	이베이	https://www.gsshop.com/	바/ 컵/ 파인트	완제품
	마켓컬리	https://www.kurly.com/	바/ 컵/ 파인트	완제품
개인사업자		배달앱 (배민, 요기요)	벌크	물품공급거래 가격상이
자사몰		<u>롯데웰푸드몰 직영 스토어</u> (naver.com)	바/ 컵/ 파인트	완제품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3%	78%	1.2%	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28%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나뚜루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번호	순서(계약만료일: D-day)	기간
진행	①	귀하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십니까? 예→②, 아니요→⑦	D-180 ~ D-90
	②	아래에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요→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요→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귀하께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요→A	①+15 일 이내

	⑤	귀하께서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예→C, 아니요→⑥	D-180 ~ D-90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요→D	D-180 ~ D-90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요→⑧	D-180 ~ D-90
	⑧	귀하께서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예→E, 아니요→A	D-60 일 이전
결과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금, 원·부재료 대금 등 이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1 호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2 호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3 호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4 호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5 호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①-6 호
---	-----------------------

또한 당사는 아래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인정되거나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점포이전이나 노후시설보수 등의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1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2.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서 제 22 조 제 1 항에 의한 가맹본부 제시 주방기기의 설치·사용 의무를 2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3 조 제 7 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1 호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서 제 31 조 제 2 항에 따라 매출상황, 회계원장 등 보고의무를 3 회 이상 거부,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2 호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21 조에 따른 가맹본부의 점포 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결과 고의적 매출누락 또는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견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상품대금, 연체이자, 조사비용 등의 추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①-3 호
12.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실 관련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명령 등)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4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1 호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2 호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3 호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4 호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5 호
6.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6 호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7 호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8 호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8 조 ②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 제정·개정인 경우, 귀하에 사전 통보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계약서 제 50 조 ④-1, 2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계약기간 중 계약 수정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만료일로부터 180일부터 90일사이의 기간 동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식으로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 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문의
○ 양도인이 가맹계약의 양도를 요청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 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담당팀 (양수인 면담포함, 15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 일 소요) → 가맹권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나뚜루 전문점담당 2670-6171
○ 양수인이 "당사에게 양도인과 관계되는 일체의 청구권이나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초기경영 지도비 및 보증금, 가맹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상속) 신청 → 담당팀 검토 → (상속자 면담 포함, 15 일 가량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상속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의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귀하가 속한 영업지역과 동일한 시, 군, 구내에서] [나뚜루]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나뚜루에서 취급하는 아이템과 동일한 아이템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동일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나뚜루전문점담당 02)2670-617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나뚜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연중 무휴	문의: 나뚜루전문점담당 02)2670-6179

※ 최초 계약시 별도로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매출증진도모 및 점포관리력 개선을 목적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명 이상 (개별 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근무직원의 경우 아르바이트 사용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포(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개별 가맹점포(영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나뚜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제품 광고	전액	-	-	대중매체 광고
광고고지물	제품 광고	전액	-	-	포스터 등 POP 물
판촉 행사	행사시마다 판촉 분담을 협의 결정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협의 → 가맹점 행사 진행 → 행사 종료후 최종분담금 확정		1. 경품의 경우 당사제품외 전액 본부부담 2. 원가기준 가맹본부 50%부담 (개별행사시 협의후 조정가능)

당사는 가맹점과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제휴할인

구 분	가맹점 부담	가맹본부 부담	분담 절차	비 고
OK 캐쉬백 포인트 할인 (포인트 보유시 20% 차감할인)	50%	50%	행사 계획 공고	제휴사 수수료 20% 가맹본부 수수료 50% 부담

② L.POINT 카드

- 1) 가맹점사업자는 L.POINT 카드 회원이 점포에서 제품 구매시, 회원등급에 따라 결제 금액의 0.3%(일반회원), 0.5%(우수회원)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제휴에 의해 할인(통신사, 타 제휴채널: SKT, OK 캐쉬백 등)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은 불가합니다. 최소 10 원 단위로 사용가능하며, 1 점은 현금 1 원에 해당합니다.
- 2) 우수회원은 나뉘루의 경우 연간 4 회 이상 방문(포인트 적립)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3) 포인트 적립 금액은 전액 본부가 부담합니다.
- 4) L.POINT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는 회원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서만 사용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L.POINT 카드와 관련하여 얻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부정한 방법 (타인 및 고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본인의 L.POINT 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L.POINT 카드의 운영방법은 가맹본부의 영업 정책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쿠폰 및 카드형 금액권

구분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분담 절차	비고
모바일 쿠폰	금액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상품권 판매가액의 8.8% 비용부담)	
	제품교환권	50%	50%	행사 계획 공고 (수수료: 상품권 판매가액의 11% 비용부담)	

※ 모바일 쿠폰 종류 및 수수료는 대행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점 및 본사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당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 일 내외	17p~21p 참조
가맹점 희망자 본사 방문	- 전화접수 문의, 희망지역 확인, - 점포개발자 전화상담, 가맹본부 방문, 현장상담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 14 일 전	-
지역 담당자 현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결정	- 가맹점 개설 승인	즉시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D-43	-
가맹금 지급	- 가맹금 입금(가맹금, 보증금, 교육비)	계약체결후 3 일 이내	13,160
점포 실측 및 설계	- 투자비 산출 및 시공업체 선정	D-28 ~ 35 (7 일)	
인테리어 공사 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 (1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25 ~ 26 (21 일)	
기기장비 설치	- 가맹점 운영 필 수 기기장비 설치	D-5 (1 일)	
교육	- 근무자 및 대표자 교육	D-10 ~ 3 (7 일)	
최초 상품 입고	- 근무자 및 대표자 교육	D-5 ~ 영업개시 전 (1 일)	
점포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을 개점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초기 인력지원	가맹점 개점시 가맹본부 파견관리자를 통하여 영업활동 등을 지원	가맹점 개점 초기에 한해서 지원	1) 정상근무(8시간)기준시 5일 이내 무상지원 2) Full근무(영업시간 종일근무)시 정상근무 2일로 간주하여 3일 이내 무상지원	가맹본부 협의 후 지원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필요시 또는 가맹사업자 요청 시	제품소개, 시장분석, 판매증진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 파견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에 의한 경영 지도 실시 → 경영지도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시 가맹사업자와 협의 또는 가맹사업자 요청시 가맹사업자 부담	

4. 신용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나뚜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일수	비 고
정규 교육 (점포관리자 양성 교육)	가맹점 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자 또는 실제 운영자 및 점포관리자(점장, 부점장)를 대상으로 가맹점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			
	▶ BOC 과정: 아이스크림 이해, 아이스크림 실습, 커피이론 등 ※BOC: Basic Operation Course	집체교육	3 일	필수 교육
	▶ SOC 과정: 기본 오퍼레이션 숙달, 점포관리자의 기본업무이해, 현장 체험 ※SOC: Store Operation Course	현장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나뚜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일수)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교육일수	비 용	비 고
점포관리자 양성과정	정규	3 일	660	2 인 입소,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점포관리자 양성과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 조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30 일 내로 교육생을 추천, 참석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구분	지역	명 칭	소재지
1	서울	나뚜루시그니처 서울대입구역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57 성진빌딩 1 층

[상기 직영점 중 나뚜루시그니처 서울대입구역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구 분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나뚜루시그니처 서울대입구역점	1 년 6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나뚜루시그니처 서울대입구역점	409,065	22 년 6 월 24 일 오픈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준법경영팀(02 - 2670 - 69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2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지식재산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별첨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은 매장 규모 및 메뉴 등에 따라서 물품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별도 제시하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첨 4 상품·용역 권장가격 _ 나뚜루 시그니처>

※ 귀하가 이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1 상품·용역 권장가격 _ 나뚜루>

※ 귀하가 이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2 물품내역(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3 물품내역(아이스크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4 물품내역(소모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